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10062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0.12.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8.02.]

홈페이지[<http://www.jangchungdang.com>]
대표메일:
heros007@jangchungdang.com

[브랜드명 : 장충당]

정 보 공 개 서

[(주)장충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4 . 24 .

[장충당]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427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4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373-616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2-506-618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본부 031-373-616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장충당	장충당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427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4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10.7	2011.10.7	조 창 호	031-373-6160	032-506-6180
	법인등록번호	285011-0204705	사업자등록번호	128-86-66357	

장충당 경영은 2010년 8월12일 행신점(상호및 업종변경), 2010년 5월17일 마두점을 직영으로 개업하였습니다

* 2011년 2월 가맹1호점 오픈 기점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011.10.7일 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조창호/ (주)장충당	장충당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427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4층)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 창 호	031-373-6160	032-506-618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였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장충당	장충당	2011.10.7. 2017. 5.15	고양시 덕양구 충장 로2(행신동.센트럴빌 딩205호)	장원교 조 창 호 로 변경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 사업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장충당	족발 전문점
상 호	장충당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등록 제 41-0229093호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가맹사업 간판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3,973	144,631	-30,658	926,303	-16,730	-16,125
2022년	65,987	138,428	-72,441	717,659	-51,732	-41,873
2023년	54,227	152,196	-97,968	530,625	-25,475	-25,526

* 2020~22년 상세 재무제표는 별첨2를 참조바랍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창호	대표이사	2009.1~2010.6	CJ프레시웨이 사업부장	개발사업총괄
			2011.4~2011.9	장충당 이사	프랜차이즈총괄
			2011.10~2017.5	(주)장충당 이사	프랜차이즈 총괄
			2017.5~현재	(주)장충당 대표이사	사업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명		0명

2023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첨부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장충당 (상표권)	서비스권	2010.11.3. 출원 2012.3.26. 등록	출원 제 2010-0028014 등록 제 41-0229093호	장원교	2022.3.2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장충당]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0년 12월2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0년 5월 17일)

2. [장충당]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장충당	장충당	장원교	2010.12.22~2011.10.6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7-4
(주)장충당	장충당	장원교	2011.10.7.~2017.5.1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2-4외 1필지 센트럴빌딩 205호
(주)장충당	장충당	조창호	2017.5.15.~2019.5.8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2(행신동.센 트럴빌딩205호)
(주)장충당	장충당	조창호	2017.5.9.~현재	안양시동안구 홍안대로 415, 427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4층)

3. [장충당] 업종

영업표지	업종	
장충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돼지고기(족발)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장충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5	15	2	14	14		10	10	
서울	5	5		4	4		3	3	
부산	2	2		2	2		1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	1		1	1		1	1	
경기	7	7		7	7		4	4	
강원									
충북									
충남							1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023년 12월말 기준 가맹점 10점입니다

5. 최근 3년간 [장충당] 가맹점 수

2010년 12월 22일부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가맹점은 2011년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3	3		1		15
2022	15			1	1	14
2023	14	1	4	1	1	10

*가맹점 사업자 내역은 별지를 첨부합니다

6. [장충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장충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최근3년간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장충당] 가맹점 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⑨	면적 3.3m ² 당	상한 ^⑩	면적 3.3m ² 당 ^⑪	하한 ^⑫	면적 3.3m ² 당 ^⑬	
전체 ^⑥	10	413,789	20,381	1,366,217	61,760	60,444	3,166	
서울	3	841,544	38,042	1,366,217	61,760	471,880	18,107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4	280,995	15,327	556,529	24,615	71,896	6,288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 10개 점포의 연간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장충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장충당]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10	2,92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장충당]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사 및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장충당]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비와 판촉비를 분담하는 기준은 []쪽을 참고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광고	소계		-	-	-	*가맹점 자체광고
판촉	소계		-	-		가맹점 자체판촉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개인 상품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14	031-970-2201~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장충당”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장충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점포시설투자중 점포환경에 따른 별도공사(철거공사, 냉난방공사, 상하수도설비, 가스공사, 덕트공사, 각종 인허가, 소방, 외부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래 개점행사비는 가맹점주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❶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600]				
가입비	3,300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가맹점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시장조사비 -운영매뉴얼등 -영업표지 사용등	영업개시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오픈 교육비	3,300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교육시작1일 이전에 계약해지	오픈 2주전 직영점 실습교육	교육이 개시되면 반환되지 않음

❶ 가맹금은 본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운영매뉴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과 가맹점 오픈을 위한 상권 및 점포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대가와 같은 소멸성 대가이기 때문에 본 계약을 체결 후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전체 반환하고 영업 중 명백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여분을 반환합니다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본사가 공급한 상품비미지급, 물품파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상계등	계약 종료 및 해지 후 본사의 영업표지와 관련된 사항의 철거가 종료된 후 배상액을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

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 고
합계	9,600	
가입비	3,300	
오픈교육비	3,300	
(현금)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물물품의 상세 품목은 정보공개서 마지막 [별첨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49.5㎡,15평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계		[39,790 +@]				+@: 추가공사
인테리어② (점포내장공사)	가맹본부	19,800	1,320	계약체결후70 %, 완공후 30% 1일이내	설계전 계약취소	3.3㎡ 늘어날때마다 120만원(vat별도) 추가부담
주방/홀 설비.기물	가맹본부	12,840		계약체결후70 %, 완공후 30% 1일이내	발주전 계약취소	주방집기 일체 홀집기및 의.탁자
간판.사인물	가맹본부	4,950		계약체결후70 %, 완공후 30% 1일이내	발주전 계약취소	전면 4.5M 기준
POS	지정업체	렌탈		물품제공후 1일이내	상품공급전 계약취소	구매or렌트 선택
최초공급상품 비용	가맹본부	2,500~3 ,000		물품제공후 1일이내	상품 미공급시	생족발,야채,주류 국수등
추가공사	협력업체	별도 책정				철거,냉난방,상하 수도설비,가스,인 허가,화장실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위 표에 기재된 비용중 인테리어를 부득이하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비용을 지불(감리비: 50만원,VAT별도)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점포가 없을 경우)	당사 가맹본부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원하는 지역내 매물 파악 → 가맹희망자의 가부결정 ※ 가맹희망자가 당사 가맹추천 점포 입지를 원하지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은 가맹희망자의 부담입니다.
가맹희망자 (점포가 있을 경우)	당사 가맹본부 배정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입점 타당성 결과 도출→ 당사 가부 여부 결정 → 가맹희망자의 계속 여부 결정 ※ 가맹본부가 입점타당성을 조사 후 기준에 따라 가맹 계약자에게 가맹 의사를 묻게 됩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불가합니다. 부적합 판단이 난 경우 새로운 점포 물색 여부는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따르며 이후 진행은 (점포가 없을 경우)와 같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적극적인 가맹점주 역할을 하실분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
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9~30page의 광고및 판촉활동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교육훈련비 (보수교육)	가맹본부	25만원/회	원액교체와 교육후 지급	반환없음		즉발육수원액 변질로 오픈후 2회이상 발생시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주전체 50%	다음 월 20일	반환없음		가맹주 협의후 시행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외 1개사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6~37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되는날까지			①월계속가맹 금의지급의무 기한을경과했 을시
로열티	가맹본부	137,500원/월	매월말 분납	반환없음		월말 상품비로 신청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300만원 전후	간판변경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결정
POS 사용료	협력업체	12,000/월				렌탈업체 지불

① 금전지급의무(월 계속가맹금,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체배상금, 위약벌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계약 이행 여부	매뉴얼 준수여부, 품목구입 준수여부 등의 점검	비정기	문의: FC본부 (031-373-6160)
행정자료 감독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여부 등의 지도.점검	필요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상호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되며 추가부담은 없으며 계속가맹금 로열티만 월분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1년)	137.5 /월	계약연장(갱신) 후 매월말분납	반환되지 않음	상표권의 사용과 경영지도의 대가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시 가맹점이 정상적운업을 할 수 있도록 상품제공 방법 및 기술이전을 시행한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장충당] 운영권을 가맹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장충당]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 양수인은 최초가맹금중 “오픈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26page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 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적정범위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장충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장충당]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원재료 또는 부재료등의 구입또는 임차와 관련 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장충당]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장충당]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 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족발 (대,중,소등) 보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본부 협의를 일부메뉴 도입가능
장충당 국수 장충당 쟁반막국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기 표시된 메뉴외에 당사에서는 계절메뉴를 개발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판매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부가세 포함)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족발 특대	40,000	가격변경시 홈페이지나 공문으로 공지	2023.12월 기준
족발 대	36,000		
족발 중	32,000		
족발 소	29,000		
장충당 국수	4,000		
보쌈	36,000		
장충당 쟁반막국수	12,000		
족발 특대(Take Out)	37,000		
족발 대 (Take Out)	33,000		
족발 중 (Take Out)	29,000		
족발 소 (Take Out)	26,000		
무김치 (Take Out)	2,000		
야채 (Take Out)	1,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족발.보쌈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장충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행정구역당 1점포 인원수,인근점포거리에 따라 1~2개동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

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장충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배달을 하게 될 경우 주변 업장과의 협의를 본부는 알선하고 중재해서 진행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장충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입니다.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입니다. 상호 가맹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180일부터 90일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1항1호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1항2호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항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 1항3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0]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압류, 가처분, 채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37조 1항1호
② 가맹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각종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해당관공서로부터 시장조치등을 받고 그 시정을 게을리하여 브랜드 이미지등을 훼손시킨 경우	제37조 1항2호
③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률 위반으로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한 벌칙을 받은 경우	제37조 1항3호
④ 상표 및 서비스표등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사용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7조 1항4호
⑤ 가맹계약서 제 37 조 [광고.판촉]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7조 1항5호
⑥ 가맹본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때	제37조 1항6호
⑦ 경업금지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1항7호
⑧ 제 37조 [식자재 공급중단 및 영업중지 조치]에 의한 영업중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을”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제37조 1항8호
⑨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7조 1항9호
⑩ 기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맹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주 신규교육 미이수시)	제37조 1항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 중 [제 ①항 내지 제⑩항]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37조 2 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2항1호
②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7조 2항2호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가맹사업자가 더 이상의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 2항3호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7조 2항4호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37조 2항6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2항7호
⑦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7조 2항8호
⑧ 가맹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7조 2항9호
⑨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으로 7일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 2항10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38조 5항 1호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38조 5항 2호
③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38조 5항 3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FC본부 (031-973-6160)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서	모든권리의무	30일전 서면통지	교육수료및 교육비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귀하가 [장충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국내산생죽 및 보쌈을 직접 매일 삶아 족발을 제공하거나 국수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31-373-616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장충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설 및 추석 제외 연중무휴	문의: 가맹본부 (031-373-61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5평매장	3명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35평매장	4명이상			

* 경영주 포함한 인력으로 산정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품질관리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이상/월	지역담당 Supervisor
서비스관리 (○○항목)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이상/2월	
청결및 위생관리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이상/월	
운영관리 (○○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이상/월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장충당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중 가맹점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계획공고→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 30%중 가맹점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해지사유에 따라 위약금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① 다음의 경우 가맹점주(이하“을”)는 가맹비의 25%를 가맹본부(이하“갑”)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 “을”이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을”이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营업을 하지 않는다

② 다음의 경우 가맹점주(이하“을”)는 가맹비의 50%를 가맹본부(이하“갑”)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 “을”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갑”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날부터 10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을”이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을”은 “갑”이 약정한 원 · 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영업관련 자산을 “갑”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8~10Page]
가맹희망자문의	- 전화문의 접수(전화문의.온라인.내방)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 개인상품부에 가맹금 예치	D-28(1일)	
점포계약	- 권리 양수도 계약 임대차 계약	점포 인도일 유동적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3(21일)	
교육 실시	- 점주 사전 운영교육 실시(직영점)	D-15~10(7일)	
점포 교육	- 가맹점포 오픈전담파트 현장교육	D-2~1(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입지선정 협의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제공 14일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
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
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 환 경 개 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 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금액 ^④	비고 ^⑤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지원인원 파견 및 판촉행사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지원인원: 오픈전일로부터 3일간 인력지원 1도우미 행사1일	100만원 전후	
판촉장려금	가맹점 상품비 구매 우수점포 장려금 지원	계약서 의거 상품매출 및 우량점포 체크리스트 의한 점포선정	가맹계약기간	50만원/점포	익월 상품대금 차감방식 으로 지원

		*지원조건 미충족시 지원하지 않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가맹점에 필요한 판매용 집기를 관측기간 동안 무상대여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031-973-616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031-973-616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장충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①	신용제공자 ^②	금액 ^③	신용 형태 ^④	신용제공 조건 ^⑤
자금 지원	(주)장충당 주류업체	최대 2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31-973-6160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가맹점 오픈시 자금유동화를 위한 상품비 선지원(일주일분)	전 가맹점	가맹계약 기간	100만원 - 500만원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매출이 20%이상 떨어진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원족육수 관리	족육수 변질시 무상교체	오픈 점포	가맹계약 기간	2회까지	
상품비	상품비 지연 연체 지급이자 면제	전 가맹점	가맹계약 기간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비용

[당사는 장충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회사 소개및 이론교육 조리매뉴얼및 현장 OJT POS 사용등	실습및 이론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	필수교육
정기 교육	운영 매뉴얼 교육	이론교육	1회/년 이상	필수교육
비정기 교육	재계약 교육및 가맹점 정책 설명회 신메뉴 출시 조리교육	이론교육 이론교육 실습교육	갱신계약이전 발생시 발생시	필수교육
보수 교육	족발 맛유지 미흡시	이론/실습교육	본사에서 현장지도	선택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장충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 고
신규교육	13일	3,300	오픈전 점주교육 (가맹비 오픈교육비에 포함)
정기교육	6시간	무상	운영및 매뉴얼교육(점포 or 본사)
비정기교육	2시간	실비정산	
보수교육	6시간	오픈후 1회차 무상 2회차부터 25만원	족발육수원액 변질로 오픈후 2회이상 발생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37조 1항 10호에 따라
오픈일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습니다]

[신규 오픈 직원 교육에 정족 인원 미달 시나 신규직원교육 이수자가 오픈
진행일에 현장 근무하지 않을 경우 오픈진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오픈전/보수/비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
에 따라 재계약상의 불이익 또는 벌점(통고/내용증명)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
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비정기.보수 교육 1회 불참	지도장 발송(시정 및 참석 독려의 건)
비정기.보수 교육 2회 연속불참	내용증명 1차 발송 (영업정지 1일)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FC본부(031-373-61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jangchungdang.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주방설비 및 기물 List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 3개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주)장충당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